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시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이 적은 호프, 카페 등의 관련업계 불만 및 건의가 빈발

○ 이에, 영업장 면적 이외에도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태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개정

나.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5조의2, 제68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4.10.14. ~ 2014.11.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내지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내지 6호“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영업장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 반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2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의2 관련)**	100	300	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및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3. ~ 6.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영업장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법 제14조제1항―――.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2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5조의2 관련)**	100	300	500